신분평 에피트 더웨이시티
무순위(사후) 1차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신청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홈페이지
1533-6700	https://brand.hldni.com/thewaycity/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주택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서류 접수 및 계약 체결일
일정	2026.10.15(목)	2026.11.25(수)	2026.11.30(월)	2026.12.03(목)	2026.12.04(금)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11.2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무순위)	O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1.25(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 2026910294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0.15.(목)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455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 접수 및 계약 체결
일정	2026.11.30(월)	2026.12.03(목)	2026.12.04(금)
방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980번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의 주택 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본인 입주 여부, 입주예정시기 등 포함) 작성 및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6.11.04(수)]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3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공급내역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 135번지 일원(장성지구 A2블럭)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2층 ~ 지상 29층 10개동 총 992세대 중 잔여 395세대
■ **입주시기** : 2029년 0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잔여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2026910294	01	059.9960B	59B	59.9960	25.3115	85.3075	41.2155	126.5230	36.1938	24
	02	075.7230A	75A	75.7230	26.7221	102.4451	52.0193	154.4644	43.4643	41
	03	084.9568A	84A	84.9568	27.2010	112.1578	58.3631	170.5209	47.5851	254
	04	112.8127	112	112.8127	27.3457	140.1584	77.4996	217.6580	59.4649	76
	합계									**395**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타입)	층구분	잔여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시
							계약시	계약후 30일이내	2027.04.30	2027.09.30	2028.03.31	2028.09.30	2028.12.31	2029.04.30	
59B	1층	1	113,696,130	252,003,870	-	365,700,000	10,000,000	26,570,000	36,570,000	36,570,000	36,570,000	36,570,000	36,570,000	36,570,000	109,710,000
	2층	1	117,022,760	259,377,240	-	376,400,000	10,000,000	27,640,000	37,640,000	37,640,000	37,640,000	37,640,000	37,640,000	37,640,000	112,920,000
	3층	1	119,478,870	264,821,130	-	384,300,000	10,000,000	28,430,000	38,430,000	38,430,000	38,430,000	38,430,000	38,430,000	38,430,000	115,290,000
	4층	-	120,691,380	267,508,620	-	388,200,000	10,000,000	2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116,460,000
	5층이상	21	122,152,610	270,747,390	-	392,900,000	10,000,000	29,290,000	39,290,000	39,290,000	39,290,000	39,290,000	39,290,000	39,290,000	117,870,000
75A	2층	2	137,262,350	304,237,650	-	441,500,000	10,000,000	34,150,000	44,150,000	44,150,000	44,150,000	44,150,000	44,150,000	44,150,000	132,450,000
	3층	1	140,153,720	310,646,280	-	450,800,000	10,000,000	35,080,000	45,080,000	45,080,000	45,080,000	45,080,000	45,080,000	45,080,000	135,240,000
	4층	2	141,583,860	313,816,140	-	455,400,000	10,000,000	35,540,000	45,540,000	45,540,000	45,540,000	45,540,000	45,540,000	45,540,000	136,620,000
	5층이상	36	143,293,810	317,606,190	-	460,900,000	10,000,000	36,090,000	46,090,000	46,090,000	46,090,000	46,090,000	46,090,000	46,090,000	138,270,000
84A	1층	7	144,941,580	321,258,420	-	466,200,000	10,000,000	36,620,000	46,620,000	46,620,000	46,620,000	46,620,000	46,620,000	46,620,000	139,860,000
	2층	13	149,200,910	330,699,090	-	479,900,000	10,000,000	37,990,000	47,990,000	47,990,000	47,990,000	47,990,000	47,990,000	47,990,000	143,970,000
	3층	12	152,309,910	337,590,090	-	489,900,000	10,000,000	38,990,000	48,990,000	48,990,000	48,990,000	48,990,000	48,990,000	48,990,000	146,970,000
	4층	10	153,864,410	341,035,590	-	494,900,000	10,000,000	39,490,000	49,490,000	49,490,000	49,490,000	49,490,000	49,490,000	49,490,000	148,470,000
	5층이상	212	155,729,810	345,170,190	-	500,900,000	10,000,000	40,090,000	50,090,000	50,090,000	50,090,000	50,090,000	50,090,000	50,090,000	150,270,000
112	1층	2	176,282,960	390,817,140	39,099,900	606,200,000	10,000,000	50,620,000	60,620,000	60,620,000	60,620,000	60,620,000	60,620,000	60,620,000	181,860,000
	2층	4	183,552,960	406,934,640	40,712,400	631,200,000	10,000,000	53,120,000	63,120,000	63,120,000	63,120,000	63,120,000	63,120,000	63,120,000	189,360,000
	3층	4	187,391,520	415,444,680	41,563,800	644,400,000	10,000,000	54,440,000	64,440,000	64,440,000	64,440,000	64,440,000	64,440,000	64,440,000	193,320,000
	4층	3	189,310,800	419,699,700	41,989,500	651,000,000	10,000,000	55,10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195,300,000
	5층이상	63	191,608,120	424,792,830	42,499,050	658,900,000	10,000,000	55,890,000	65,890,000	65,890,000	65,890,000	65,890,000	65,890,000	65,890,000	197,670,000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분양금액은 사업주체 자체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4 청약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청약 자격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5 청약 신청 및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 신청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2.03(목) ~ 2026.12.12(토)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12.03(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및 계약 안내

당첨자 서류 제출 안내

- 서류 제출 일시 : 2026.12.04(금) 10:00~16:00
- 구비 서류(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2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구분	해당구분		제출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해당			
본인 제출 시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여권 : 2020.12.21. 이후 신규 발급분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및 변동사유, 발생일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단신부임 입증 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비자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시 생업사정 불인정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세대원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해당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대리인 제출 시	●		인감증명서	위임인	■ 당첨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 서류제출 위임용/본인발급분) ※ 대리인 제출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인감도장		■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		위임장		■ 견본주택 비치 ■ 당첨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상기 유의사항 참고)

계약 서류 및 계약 안내

- 계약 체결 일시 : 2026.12.04(금) 10:00~16:00
- 구비 서류(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2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구분	해당구분		구비사항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해당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증빙서류	본인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여권 : 2020.12.21. 이후 신규 발급분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분에 한함)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 「인지세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발급 후 사본 제출 ■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 15만원(사업주체와 균등 부담) ■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 ※해당기관 영업시간에 방문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후 출력 ※ 사업주체 부담분 수입인지는 입주 시 별도 교부 예정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견본주택 비치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견본주택 비치 ■ 112타입 계약자 한정
대리인 계약 시	●		인감증명서	위임인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발급분) ※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인감도장		■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		위임장		■ 견본주택 비치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상기 유의사항 참고)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2026.12.04.(금) 17:00까지 입장완료 후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2026.12.04.(금)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7 참고사항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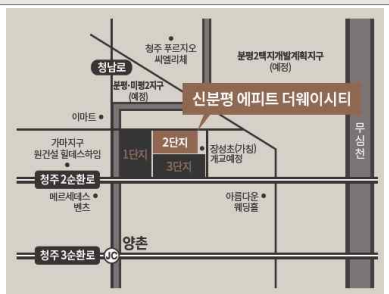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8 기타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	시공업체	
상호	유한회사 에이치엠서빈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	에이치엘에코텍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50길 23, 5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신천동)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대로 359(옥동)
법인번호	110114-0260684	110111-0274699	110111-3600370

견본주택

구분	내용
위치	 
운영	▪ 운영시간 : 10:00 ~ 18:00 ▪ 운영기간 : 분양종료 시까지(일정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번호 : 1533-6700 ▪ 홈페이지 : https://brand.hldni.com/thewaycity/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